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 LINC 3.0
Mokwon University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3.0

목원대학교가 만들어가는 산학연협력의 새로운 물결 WAVE

목원대학교 LINC 3.0 사업단
표준 현장실습 안내자료

2024. 4.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 LINC 3.0
Mokwon University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3.0

1 표준 현장실습 운영 현황

❍ 현장실습이란?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으로, 협약기간 동안 학교에서 배운 전공 이론을 실제 산업체 현장에서 적용해봄으로써 실무 중심의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지원대상

기업	학생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LINC3.0 참여학과 재학생
인재 양성에 열정이 있으며 산업 현장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	
교육부 고시에 근거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 충족 기업(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 등)	

- 2024년 LINC3.0 참여학과 (26개)

건축학부	섬유·패션디자인학과	부동산금융보험학과
도시공학과	시각커뮤니테이션디자인학과	항공호텔관광경영학과
컴퓨터공학과	입체조형학부	게임콘텐츠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연극영화영상학부	애니메이션학과
게임스프트웨어공학과	경영학과	웹툰학과
로봇학과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학부	생명과학과
미술학부	글로벌비즈니스학과	식품제약학부
도자디자인과	금융경제학과	화장품학과
산업디자인학과	마케팅빅데이터학과	

❍ 주요내용

과목명	국내계절제인턴십	국내학기제인턴십
대상 학년	2, 3, 4학년 (3학기 이상 이수자)	3, 4학년 (4학기 이상 이수자)
이수 학점	전공 3학점	전공 15학점
	취득 성적은 통과(P)/미통과(F)로 구분되며, 정규학기 평균 성적과 석차 산출 및 장학생 선발에 산입되지 않음	
실습 기간	4주, 8주	4개월(15주 이상)
	1일 8시간(주 40시간)	

※ 계절제, 학기제 연계 시 실습 기간 6개월 연속 진행 가능(LINC3.0사업단과 사전 논의)

○ 지원내용

구분	기업	학생
혜택	- 전체 실습과정 종료 후 최저임금의 25% 국고 지원 - 우수 인재의 조기 발굴 및 신입사원 재교육 비용 절감 -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실습지원비 1만원당 1마일리지, 현장실습 이수 학생 채용 시 1명당 300마일리지 부여)	- 매월 기준연도 최저임금 이상 실습비 지원 - 전공학점 인정(계절제 3학점, 학기제 15학점) - 전공 실무에 기반한 취업 역량 강화 - 실습 종료 후 해당 기업으로 채용 연계 가능
역할	- 매월 기준연도 최저임금 이상의 실습비 지급 - 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 실습생 출결 관리 및 평가	- 주간보고서, 종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목원대학교를 대표하는 예비 직업인으로서, 성실한 자세로 실습 직무 수행

2 2024 현장실습 참여기업 모집

○ 과 목 명: 국내계절제인턴십, 국외(해외)계절제인턴십, 국내학기제인턴십

○ 주요내용: 2024년 하계 계절제 현장실습, 2024년 2학기 학기제 현장실습

○ 모집기간: 2024년 4월 25일(목) ~ 2024년 5월 24일(금) [매칭기간 포함]

○ 모집대상: 목원대학교 학과연계 및 추천 기업, LINC3.0사업단 가족회사 가입 기업, 기술개발과제 참여기업, 재직자교육 참여기업, IPP일학습병행제사업단 연계 기업, 대전 소재 기관 및 기업, 그 외 현장실습 참여희망 기업 등

○ 신청방법: **현장실습 참여 신청 서류(아래 서류)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붙임1] 사전 서면점검서(신규 실습기관만 해당)
- [붙임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법인등록증(신규 실습기관만 해당)

※ 기업-학생 매칭 완료 후 협약서 등 기타 서류 제출 예정

○ 문의: 목원대학교 LINC3.0사업단 현장실습 지원 담당자

- 전화번호: 042-829-8162 (월~금, 09:00~17:30 통화 가능)
- E-mail: nhj0535@mokwon.ac.kr

❍ 운영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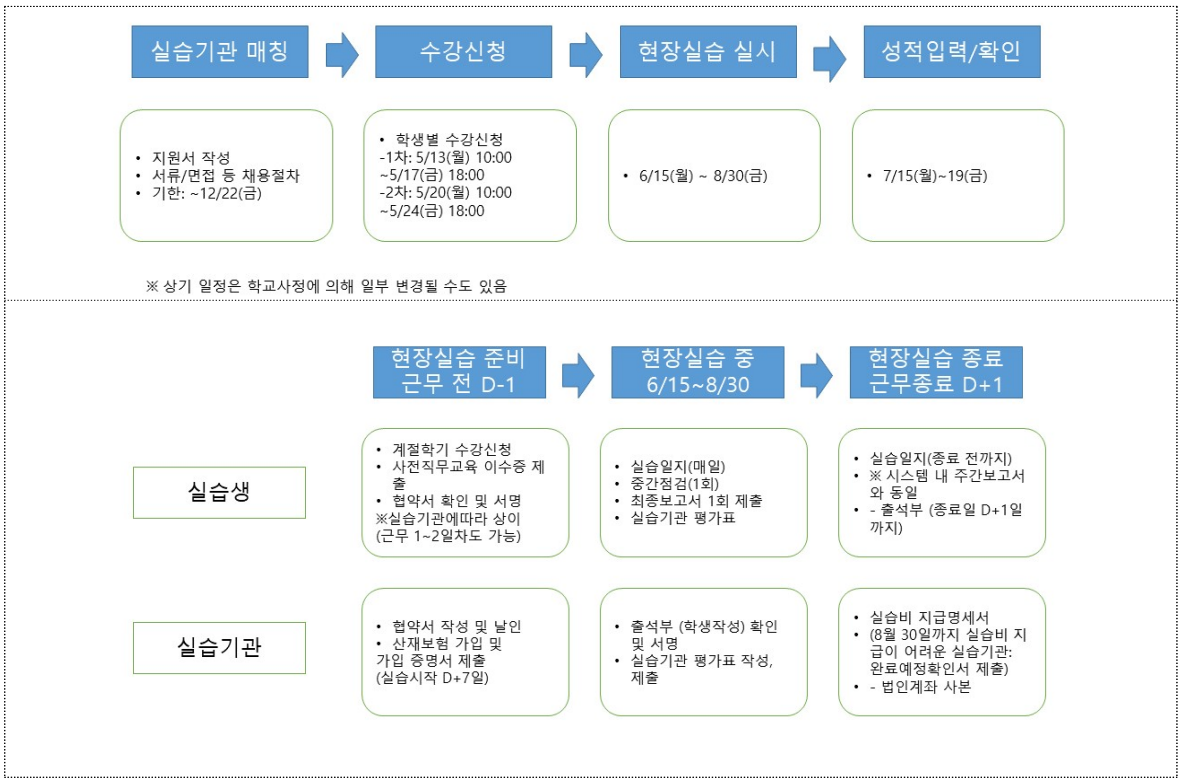

3 의무사항 및 지원내용

❍ 기업 의무사항

- 실습기관이 75%이상 실습비 지급(선 100% 지급 후 학교에 25% 요청)
- 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 학교 지원내용

- LINC3.0 사업단에서 실습비 25% 지원
- 실습생 상해보험 가입
- 실습비 처리절차: 선지급 후정산 처리

① 실습기관에서 참여학생에게 월 기준 실습비 100% 지급
② 학교에서 실습기관에 실습비 지급명세서 발급 요청 및 확인
③ 실습기관에서 학교로 실습비 지급명세서 제출
④ 학교에서 실습기관으로 25% 실습지원금 정산
⑤ 실습기관에서 실습지원금25% 수급

4 현장실습 관련 요청사항

❍ 요청내용

구분	실습 전	실습 중	실습 후
현장실습 참여학생	• 사전직무 필수 교육 이수	• 협약서 서명 • 실습일지 작성 • 중간점검 • 최종보고서	• 출석부 작성 및 제출
현장실습 참여기업	•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 사전 서면 점검서* • 법인등록증* (*신규기업에 한함)	• 협약서 • 실습기관 평가서	• 출석부 확인 • 실습비 지급명세서 • 법인계좌 사본 • 선지급미시행확인서
대학	• 책임교수 입력/확인 • 실습기관 등록 및 • 제출서류 취합	• 협약서 • 실습기관 평가서 • 졸업예정자 학사 처리	• 출석부 • 실습비 지급명세서 • 법인계좌 사본 • 선지급미시행확인서

❍ 출석부 작성방법

- **연도**: 해당 주차수에 해당하는 연도 기입
- **주차**: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가 수행되는 1,2월 주차수 기입
- **일자**: 월/일 형태로 기입
- **출석/지각/결석/휴일수**: 해당 주수별 일자를 기입하고, 주수별 합산 7일이 되도록 입력
- **출결**: 출석, 지각, 결석, 휴일 중 기입
  · 출석: 실습수행 일자에 정상적으로 출석한 경우
  · 지각: 실습수행 일자에 정해진 시간 이후 출석하여 지각으로 처리되는 경우(실습일수에서는 출석일로 처리)
  · 결석: 휴일이 아닌 실습수행 일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무단 결석이 있을 경우 학교와 협의 필요)
  · 휴일: 실습기관의 휴무일(실습기관에서 정한 휴무일로 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 실습기관의 휴무일 외 학생에게 부여(허용)한 휴일(교육부 고시에 따른 학생보장 휴일 및 공휴일, 실습기관 부여 휴일 등 포함)

5 하계 계절제 현장실습 일정 및 운영절차

❍ 하계 계절제 현장실습 운영 일정

기간	내용
4/22~5/7	• **기업 대상 현장실습 안내자료 발송 및 기업 신청 서류 취합** • 현장실습 참여 희망 학생 신청서 취합
5/7~5/17	• **현장실습 설명회** 개최(기업별, 학과별, 단과대학별 등) • 참여학생 모집 홍보(온·오프라인 홍보물 배포 등)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설을 통한 질의응답, 전화 유선 상담
5/20~5/21	• **현장실습 기업-학생 매칭데이** 진행 • 기업 자체 면접 실시
5/22~5/23	• 매칭 현황 취합 및 정리 • 2학기 현장실습 연계 매칭 희망학생 정리
5/24	• 매칭 현황 최종 확인 • 학사지원과에 현장실습 참여학생 명단 송부
5/27~5/31	• 계절제인턴십 수강신청
6/3~6/23	• 참여학생 산재보험 가입(기업)
6/24~8/31	• 하계 계절학기 개강 및 현장실습 운영
7/5~7/10	• 하계 계절학기 성적 입력을 위한 기업 서류 취합
7/12~7/16	• 하계 계절학기 성적 입력 기간

6 문의처

❍ 문의: 목원대학교 LINC3.0사업단 현장실습 지원 담당자

- 전화번호: 042-829-8162 (월~금, 09:00~17:30 통화 가능)
- E-mail: nhj0535@mokwon.ac.kr

붙임1 사전 서면점검서(신규 실습기관용)

[매뉴얼 제1호 서식]

사전 서면점검서(신규 실습기관용)

■ 목적

- 본 사전 서면점검서는 실습교육의 안전성 등의 점검을 목적으로 하며,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9조제6항에 따른 표준 서식입니다.
- 학교와 실습기관 간 처음으로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서식으로, 실습기관에서는 운영계획서 제출 시 본 서면 점검서 작성본을 함께 학교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실습기관 정보

기관(법인)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업태		종목	

■ 자체 점검표 (실습기관에서 작성)

	점검 사항	내용 (해당 사항에 체크 또는 기술)
1	실습기관의 사업장(근무환경) 형태 [복수선택 가능]	☐ 일반사무실 형태 ☐ 연구소 형태 ☐ 생산/제조 등의 공장 형태 ☐ 주 사업장 외(건설현장, 자동차/선박/항공 등) 형태 ☐ 기타 : _____
2	학생이 배정될 부서 또는 실습공간의 환경 및 형태 [복수선택 가능]	☐ 일반사무실 형태 ☐ 연구소 형태 ☐ 생산/제조 등의 공장 형태 ☐ 주 사업장 외(건설현장, 자동차/선박/항공 등) 형태 ☐ 기타 : _____
3	학생에 대한 실습공간 배정 형태	☐ 소속 근로자와 같은 공간에 배정된다. ☐ 소속 근로자와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배정된다.
4	학생에게 실습에 필요한 물품 제공 여부(책상, PC 등)	☐ 모든 필요 물품 및 비품을 제공한다. ☐ 일부 제공한다.(학생 준비 필요 물품 : _____) ☐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5	학생의 제조 또는 생산 업무에 참여 여부	☐ 물품 제조·생산 등의 활동(업무)에 참여하지 않는다. ☐ 물품 제조·생산 등의 활동(업무)에 일부 참여한다. ☐ 물품 제조·생산 등의 활동(업무)을 주 실습 직무로 참여한다.
6-1	학생이 수행할 실습 직무의 화학물질 또는 유해물질 등의 취급 여부	☐ 취급하지 않는다. ☐ 취급한다.(6-2 문항으로)
6-2	화학/유해 물질을 취급할 경우 안전보호장비(구) 제공 여부	☐ 제공된다. ☐ 제공되지 않는다.
	※ 실험·실습 형태 및 화학·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는 현장교육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되어야 함	
7	기타 유의사항(필요시 작성)	

붙임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

*작성방법 : 공란에는 내용을 기입하며, [ ] 에는 ○ 기입하여 작성

기관(법인)명		영문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 연월일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종업원 수		매출액	
사업장소재지			
홈페이지			

기관현황	구분	상장여부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류(종목)
	대기업 [ ]	코스피 [ ]		
	중견기업 [ ]	코스닥 [ ]		
	중소기업 [ ]	비상장 [ ]		
	공공기관 [ ]			
	협회/기타 [ ]			

기관 근로형태	정규 근로시간	▪ 1일 기준 :[ ]시간 / ▪ 1주 기준 : [ ]시간
	정규 근로일수	▪ 주 : [ ]일 / ▪ 근로요일 : [*직접기입*] *월~금 등 요일 기입

관리부서	부서명		성명		직위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전형방법	*서류선발 / 면접선발 / 학교추천선발 등 전형 및 선발방법 기입*			
전형절차 및 일정	접수마감일자	면접일자	최종선발일자	※참고일정
	00월00일00시 [ ]	00월00일00시 [ ]	00월00일00시 [ ]	
	일정별도협의 [ ]	일정별도협의 [ ]	일정별도협의 [ ]	

운영계획	붙임 1.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에 따라 실시함
기타사항	*Co-op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특이사항 기입(필요시 기입)*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기준 및 절차

[운영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참고

[운영절차] (학교)Co-op 참여 의뢰(기관주도형의 경우 다음 단계부터) ▸ **[현재단계](기관)Co-op 참여 신청 및 운영계획서 회신(송부)** ▸ (학교/기관)상호 협의 후 시행 확정 ▸ (학교)Co-op 정보공지 및 교과목 개설 ▸ (학교)학생 신청접수 및 추천 ▸ (기관)학생선발 ▸ (학교)사전교육/수강신청 실시 ▸ (학교/기관/학생)3자 협약체결 ▸ (기관/학교)산재/상해보험 가입 ▸ (기관)운영계획에 따른 실시/출석관리 및 평가실시 ▸ (학생)보고서작성 ▸ (학교)성적 평정

붙임 서류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 2. 사업자 등록증 ▸최초 참여 시 또는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시 제출 3. 기관소개 자료 ▸최초 참여 시 또는 홍보 목적 등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제출

본 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이에 귀 대학에서 운영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과정에 대한 참여 신청 및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습기관명 기입] (날인/서명)

목원대학교 귀중

- 1 -

[별지 제1호 서식]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

■ [붙임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

운영과정	▪방학과정 [ ] ▪학기과정 [ ] ▪방학/학기 연계과정 [ ]
운영유형	▪직무체험형 [ ] ▪채용연계형 [ ]
실습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정규실습 시간	오전 시 분 ~ 오후 시 분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여 작성)
실습요일	월 [ ] 화 [ ] 수 [ ] 목 [ ] 금 [ ] 토 [ ] 일 [ ]
연장실습 여부	▪연장실습 없음 [ ] ▪상황별 실시 [ ] ▪주기적/상시적 실시 [ ]
산재보험 가입	▪참여 학생에 대한 산재보험을 의무 가입함(법적 의무가입 / 미가입시 운영 불가)
기타사항	▪운영 과정에 대한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Y[ ] / N[ ]
	*근로계약 체결 시 관련사항 또는 기타 특이사항 등 기입

실습지원비	정규실습시간	▪지급기준 : [월/주 기준 중 선택] ▸ [기준] / [ ]원
	연장실습시간	▪지급기준 : [시간 기준] / [ ]원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라 작성)
	지급예정일	▪당월 [ ]일 또는 ▪익월 [ ]일 (*익월의 경우 15일 이내 지급)
기타 지원 사항		▪식사 [ ] ▪교통 [ ] ▪기숙사 [ ] ◂현물지원 사항

현장교육 담당자	부서명		성명		직위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실습 직무	부서명	
	주소	'실습기관 기본 정보' 상의 주소(위치)와 다른 경우 작성
	직무명	
	교육 목표	* Co-op 직무 수행을 통해 학생이 얻게 되는 교육성과 측면 기술 *
	직무개요	* 무엇을, 왜(목적, 이유), 어떻게(방법) 어디까지(범위)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 * 실제로 해당 기관에서 실시할 내용으로만 기입 * 실제와 달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거나, 단순·반복적 직무 수행이 확인될 경우 * 근로 등의 민원 및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관련 직무 사항을 확인하고 * 검토하여야 함
	운영 / 지도 계획	* 실습기간에 따른 주차별 또는 직무개요별 운영/지도계획 기술 * * * * * * * *

학생 요건	전공 (인원)	OO학과 1명, □□□학과 1명 또는 OOO학과/□□□학과 중 1명 등으로 구체적 대상 전공 또는 계열을 특정하여야 함
	학년	
	학점/ 평점	
	요구 역량	Co-op 참여 학생에게 요구되는 OA역량, 외국어 역량, 지식/기술역량, 전공과목 이수여부 등 기입
	기타 사항	

붙임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협약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협약서

본 협약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하 '교육부 고시'라 한다)에 의거하여 목원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교육과정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습기관**, 참여하는 **학생**, 운영 주체인 **학교** 간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체결한다.

제1조(교육과정) 2024학년도 1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과정으로 운영한다.

제2조(운영사항)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실습기관명 : _____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내용 및 지도 계획 등은 실습기관에서 학교에 기 제출한 교육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측에 통보하고 학교 및 학생의 동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3. 실습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별 실제 실습기간은 실습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하여 확정한다.
4. 실습시간 및 요일
   가. 실습시간 : 1일 __시간 / __ : __ ~ __ : __ (휴게시간 : 1시간 포함)
   나. 실습일수 및 요일 : 주_일(□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교육과정 상 사전협의 및 동의 되지 않은 야간(당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에 실시될 수 없다.
   라.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시간 외 연장실습이 필요한 경우 1주 최대 5시간 한도로 사전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주 최대 5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부 고시 따라 본 협약서 외 추가로 근로계약 체결형태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5. 휴게 및 휴일
   가.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1일 이상의 휴일 및 공휴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 실습기간 중 학생의 공적 의무 수행일, 경조사일, 입원일 등의 휴일 활용을 보장한다.
   나. 실습기관에서는 위 휴일 외 실습기관의 사정 및 필요에 따라 별도의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6. 실습지원비 등
   가. 실습기관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 실습지원비 기준을 준수하여 [*월/주*] 기준 _____원(세전)을 [*당월/익월*] __일 경에 학생별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학생이 중도 포기하거나, 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나. 실습기관에서 연장 · 야간 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장 · 야간 실습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지원비 외 해당 실습기관의 편의 · 복지 제도의 활용을 지원한다.
   라. 학교는 [월] 기준 515,185원을 실습 종료 후 1개월 이내 실습기관의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학생이 중도 포기하거나, 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7. 실습기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 · 기구 · 설비 등

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 · 가스 · 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 · 보건 상 필요사항을 조치한다.

8.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학교에서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학생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는 경우 해당 보험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9. 실습기관에서는 본 협약서 외 학생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며 / 체결하지 않으며*], 4대보험 중 산재보험 외 다른 보험 등에 [*가입한다 / 가입하지 않는다*].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더라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및 지도계획은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해지 및 중단 등)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중 부득이하거나, 합당한 협약해지 또는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습기관 또는 학생은 학교와 협의한 후 실습기관, 학생, 학교 간 상호 동의 및 합의하에 본 협약을 해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실습기관의 귀책사유로 중단되어 학생의 해당 학기 이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해당 실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다른 실습기관을 연계하여 학생의 학기 이수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호협력 등) 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안전보호 및 성희롱예방 등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실습기관 및 학생, 학교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상호 권리 및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운영한다.

제5조(방문 지도 · 점검) 학교에서는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기관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사항의 적합성을 방문 · 서면 등으로 점검하고, 실습기관에서는 학교의 교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 및 점검 시 적극 협조한다.

제6조(출석 · 평가) 실습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의 출석 및 평가 기준에 따라 학생의 출석관리 및 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3호 서식(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평가표 및 출석부)을 학교에 제출한다.

제7조(기타) 본 협약은 각 조항에 따른 사항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종료되며,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른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각각 서명 날인 후 상호 협의한 방법으로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__월 __일

[학 교]	[실습기관]	[학 생]
목 원 대 학 교 LINC 3.0 사업단장 정 철 호 (인)	실 습 기 관 명 기 입 대표자또는담당부서장 (인)	목 원 대 학 교 OOOO학과 O O O (인) *(학생이 많을 경우 칸 추가하여 작성)*

붙임4 **인턴십 현장 방문 지도보고서**

인턴십 현장 방문 지도보고서

1. **현장 방문 장소(구체적으로) :** _____
2. **현장 방문 일자 :** 20 년 월 일( )
3. **인턴십 기업 담당자 :**
   소속 ((주)) 성명 ㊞
4. **지도내용**

다음과 같이 인턴십 현장 방문 지도내용을 보고합니다.

실습환경 근무상태	실습 직무와 전공과의 연관성, 근무 시간(연장근무 여부) 등 점검
연수생, 연수기관 애로점 및 요구사항	실습생 애로사항/실습기관 애로사항
조치 및 보고	애로사항에 따른 조치내용
연수생 면담 기록	실습기업/직무 만족 여부, 실습 종료 후 취업 계획 등

20 년 월 일

현장 방문 지도교수

소속 : 목원대학교 성명: 인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5 LINC 3.0 현장실습 참여신청서(학생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LINC 3.0
Mokwon University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3.0
목원대학교가 만들어가는 산학연협력의 새로운 물결 WAVE

LINC 3.0 현장실습 참여신청서

1. 실습 신청내용

희망지역		희망직무		참여과정	☐ 국내 학기제 인턴십 ☐ 국내 계절제 인턴십

2. 기본 정보

단과대학		복수(부)전공명		전공명	
이름		학번		연락처	
주소 (현재 거주지)			메일주소		
총 이수학점	_____ / 132	총 이수학기		졸업 예정월	_____년 ___월

3. 학점 이수 계획(*본인 직접 상세기재*)

예시_1) 저는 3학년 2학기(6학기) 재학 중이며, 4학년 1학기 현장실습 참여를 희망합니다.
현장실습 참여 후 4학년 2학기에는 전공필수 3학점, 교양핵심(1개 영역), 융복합 필수 6학점 총 12학점, 채플 1학기 이수 예정입니다.
예시_2) 저는 4학년 1학기(7학기) 재학 중이며, 4학년 2학기 현장실습 참여를 희망합니다.
졸업에 필요한 필수 과목은 모두 이수하였으며, 잔여 학점 15학점은 현장실습을 통해 이수할 계획입니다.

•
•

4. 현장실습 추천 기업(*전담교수 기재*)

1순위		2순위	

유의사항

1. 전공 및 교양필수, 졸업작품 등 졸업요건은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LINC 3.0 현장실습 참여로 인하여 졸업 학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학과별로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캡스톤디자인 등) 및 졸업작품 등은 학과 운영내규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학과에 문의 바랍니다.)
2. LINC 3.0 현장실습 참여 대상은 "학기제 - 4학기 이상", "계절제 - 3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으로서, 이전 학년도에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턴십 학점은 총 24학점까지 이수 가능합니다.)
3. 국내학기제인턴십, 국내계절제인턴십 교과목의 취득성적은 통과(P) 또는 미통과(F)로 구분하고, 정규 학기의 평균 성적 산출 및 장학생 선발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1. 목원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에 따라 현장실습 참여 신청 학생의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번호(성명, 학번, 연락처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현장실습 신청 학생 관리 및 실습기업 매칭, 사후 취업률 조사, LINC 3.0 성과관리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학과, 학번, 성명, 연락처(필수)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제3자 제공 기관: 목원대학교 LINC 3.0 사업단,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현장실습 상해보험 가입 기관
2. 목원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본인은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본인은 위 1-2의 내용에 따라 목원대학교 LINC 3.0 사업 운영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학과, 학번, 성명, 연락처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인턴십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20_ _ 년 _ _ 월 _ _ 일

학생 본인	(인 또는 서명)	LINC 3.0 전담교수	(인 또는 서명)	학과인턴십 담당교수	(인 또는 서명)